

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

의안 번호	3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자치법규 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, 군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포상조례 등 조례 7건의 어려운 한자어 순화

: 미연에 → 사전에 / 앙양 → 드높임 / 진달 → 송부

: 회무 → 위원회의 사무 / 통리 → 총괄 / 지주목 → 지지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자치법규 담당실과 합의완료(기획실-13358, 2020.10.27.)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(단순한 표현·자구의 변경)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실-13366, 2020.10.27.)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실-13366, 2020.10.27.)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(복지과-61872, 2020.10.26.)

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의회 표창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제2호 중 “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”를 “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”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진달(進達)”을 “송부”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리하고”를 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”로 한다.

제4조(「평창군포상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제3호 중 “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”를 “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”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8호 중 “미연에”를 “사전에”로 한다.

제6조(「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양양하여”를 “드높여”로 한다.

제7조(「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지주목”을 “지지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□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표창장 및 상장)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 등을 포함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사회도의와 <u>미풍양속의 순화</u> <u>양양</u>에 솔선수범한 효자, 효부, 열녀, 그 밖의 선행자</p> <p>3. ~ 4. (생 략)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	<p>제6조(표창장 및 상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----- ----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□ 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평창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기반 시설물(이하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주민의 애호심과 자조정신을 <u>양양하여</u> 이의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드높여----- ----- -----.</p>

□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사업) 지원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농업용 자재구입(과수 <u>지주목</u>, 비료 및 농약 등) 3. (생 략) 	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-----지지대----- ----- 3. (생 략)

[붙임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실장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065